제425회 임시회
’25. 4. 22.(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동우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3. 제안이유

가. 최근 충청북도에서는 공공기관을 통해 행정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탁·대행의 범위와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과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 일부 위탁사무의 경우 사전 검토 및 공공성 평가가 미흡하여 사업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위탁이 이뤄지거나, 위탁 이후 성과 관리와 도의회 견제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다. 또한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사후평가 체계를 강화하여 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도정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

4.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 수탁기관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조례안 적용 제외 사무 명시(안 제4조)

다.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심의 절차 규정 (제5조~제7조)

라. 도의회 동의 및 위탁 예산 편성 관련 규정 (제8조)

마. 수탁기관 선정, 책임소재, 재위탁 금지 등 규정 (제9조~제11조)

바. 경비 부담, 사무 수행 중 사용료 등 징수, 정산에 관한 사항 규정 (제12조~제14조)

사. 사무처리지침, 사무편람, 교육 등 제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제15조~제17조)

아. 지도·감독 및 처분, 실적보고 및 감사 규정 (제18조~제20조)

자. 성과평가의 방법과 그 활요에 관한 사항 규정 (제21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가.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도정 전반에서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사무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기관을 통한 사무 위탁·대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 제도와 관리 기준은 부재한 상황임.

- 11개 시·도에서(대전, 경기, 세종, 충남, 울산, 대구, 전북, 부산, 경남, 경북, 제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임.

<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예산 현황(2016~2025년) >

(단위 : 천원)

연도	경상적위탁·대행(A)		자본적위탁·대행(B)		합계(C=A+B)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2016	7,310,196	0.5	16,949,164	1.17	24,259,360	1.67
2017	22,569,539	1.55	13,349,727	0.92	35,919,266	2.47
2018	28,608,572	1.76	30,585,473	1.88	59,194,045	3.64
2019	32,179,079	1.81	33,038,572	1.86	65,217,651	3.67
2020	45,488,159	2.21	28,328,431	1.38	73,816,590	3.59
2021	60,161,796	3.24	22,788,517	1.23	82,950,313	4.47
2022	61,858,361	2.82	53,339,374	2.43	115,197,735	5.25
2023	65,565,028	2.62	95,712,591	3.82	161,277,619	6.44
2024	68,521,262	2.69	115,546,313	4.54	184,067,575	7.23
2025	75,511,182	2.88	57,656,680	2.2	133,167,862	5.08

*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추출 자료(본예산, 자체재원, 성질별 세출총괄표 기준)

** 제4조(적용제외) 조문이 반영되지 않은 총예산 규모로 실제 의회의 동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의 예산 규모와는 차이가 있음.

○ 일부 위탁사무의 경우, 위탁 대상 기관의 전문성이나 사업 목적과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이뤄지거나, 위탁 이후 성과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도의회의 사전·사후 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을 통한 사무 위탁·대행은 공공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위탁 타당성 검토, 적격성 심사, 예산 편성의 정당성 확보, 성과 관리 등의 장치가 조례로 일관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개념, 대상, 절차, 통제 수단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방지하고, 위탁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도의회의 동의 절차와 사후평가, 재위탁 금지, 지도·감독 및 성과활용 등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있음.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을 명시하고, ‘위탁’, ‘대행’, ‘수탁기관’, ‘대행기관’ 등 조례 운영에 필수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를 통해 조례 해석과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위탁 사무의 법적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 것임.

○ **안 제4조는** 조례 적용 제외 사무에 관한 규정으로, 지자체 간 공동사업, 재난 등 긴급사무, 국고보조사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 조례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있음. 특히, 위탁금액이 1억 원 이하이거나, 관련 법령이나 타 조례에서 위탁 사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된 경우는 심의와 의회 동의 대상에서 제외됨.

-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등에서는 위탁 금액이 3억 원 이하인 사업들을 의회 동의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위탁·대행을 추진하기 전, 기관 설립 목적과의 부합성,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 등 7개 항목을 기준으로 사전 검토하도록 하여 위탁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회의 절차,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음. 특히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심의를 생략하거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함.

- 타 위원회와의 기능 통합사례 : 울산-민간위탁관리위원회, 대구-보조금관리위원회, 전라북도-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등

○ **안 제8조는** 도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명문화하여,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주요 사항(사무명, 예산, 필요성 등)을 포함한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연장 시에도 상임위 보고 또는 동의 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함. 위탁의 적성성에 대한 동의 없는 예산 편성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 기능을 실질화하고 있음.

-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기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자본적위탁사업비 사업 중 보조재원(국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282개이며, 그 중 사업비 1억 원 초과 사업은 139개이고, 제4조(적용제외) 조항을 모두 적용할 경우 의회 동의 대상 사업의 범위는 더욱 축소됨.

○ **안 제9조~제11조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 책임소재, 재위탁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관의 설립 목적 부합성, 전문성, 인력·시설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탁기관이 타 기관에 재위탁할 수 없도록 명시함. 사무 수행에 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나, 도지사는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여 행정책임 구조를 명확히 함.

○ **안 제12조~제14조는**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부담, 사용료·수수료 징수 및 정산에 관한 규정으로, 도지사의 자금 지원 요건,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승인, 부정 집행 시 환수조치 등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

○ **안 제15조~제17조는** 위탁 사무의 표준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처리지침 수립, 사무편람 작성·승인, 공무원 및 수탁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안 제18조~제20조는** 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보고, 감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도지사의 감독 권한과 필요 시 서류 제출 요구, 현장 검사, 시정명령 및 처분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를 통해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부당 사무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함.

○ **안 제21조는** 도지사가 매년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수탁기관 선정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 기반 행정 운용의 근거를 마련함. 조례안 시행 초기 행정 부담을 고려야여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연계 가능하도록 하였음. 다만, 향후 실효성 있는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공공기관을 통한 행정사무의 위탁·대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추진 절차와 관리 기준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위탁·대행 사무의 사전 검토, 심의위원회 운영, 도의회 동의 절차 도입, 수탁기관 선정 기준과 재위탁 금지,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까지 위탁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으며, 실무적 이행 가능성 또한 고려된 구조로 판단됨.

○ 특히, 도의회의 사전 동의와 사후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적 감시 기능을 제도화한 점은, 최근 지방자치 강화 및 재정 민주주의 흐름에 부합하는 규범적 개선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중복 방지, 수탁기관의 실질적 책임 확보 방안, 성과평가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 마련 등은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행정 전반에 대한 합리적 기준 설정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므로 제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